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페인트방식 번호판 : 번호판 전면바탕을 페인트로 도색한 번호판
2.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 번호판 전면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부착한 번호판
3. 번호판 보조대 : 번호판과 일체로 구성되어 번호판을 지지하거나 탈착을 보조하도록 만들어진 것
4.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자동차
5. 법인업무용 자동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 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조의3(번호판의 종류)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나. 보통등록번호판 : 가목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이륜자동차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3.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임

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4. 전기자동차번호판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사업용·법인업무용 자동차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한다)에 부착하는 번호판
5.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5호에 따라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제1조의2제5호가목의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업무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외 할 수 있다)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 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 1mm의 KS D6701 A1050P "0" 으로 한다. 다만,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이 10일 이내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두께 2.5mm이상의 목재판으로 한다.

② 번호판에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의 배열, 글자체 등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별표 1, 2, 2-1, 2-2, 3, 4, 5, 6, 7, 8, 15의2 또는 18과 같이 하되 아래와 같이 예외를 둘 수 있다.

1. 대형등록번호판 규격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첨단안전장치

등과 앞쪽 번호판의 간섭으로 대형등록번호판 부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쪽 번호판에 한하여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별표 1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5항에 따라 부착공간이 부족하거나 등화·반사장치와의 간섭 등 이륜자동차의 후면 구조 및 성능상 차종 및 용도 기호가 표시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13, 14 또는 15의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는 임시운행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기간, 발행 관청명 등을 별표 제9, 10, 11, 12, 16과 같이 표시한다.

④ 번호판에 표시하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 등 모든 문자는 1.3mm~1.6mm로 양각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으로 정한 문자 획의 너비는 +1mm 이내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다만,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경우에는 양각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등록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3조(번호판의 내구 성능 등) ① 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내

구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색상 내후성 : 등록번호판의 색상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720 시간 시험을 할 경우 제4조제4항의 색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방사조도 : 0.35W/m^2

나. 파장범위 : 340nm(제논 아크등)

다. 시험주기 : 빛에 노출(102분) 후 빛에 노출된 상태에서 물분사(18분)

라. 시험온도 : $63 \pm 3^\circ\text{C}$

마. 습도 : $50 \pm 5\%$

2. 내마모성 : 등록번호판의 문자 색상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할 경우 박리, 갈라짐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등록번호판과 모래 분사장치 노즐 분사거리 : $380 \pm 10\text{mm}$

나. 모래분사노즐 직경 : $4\text{mm} \pm 0.2\text{mm}$

다. 물과 모래 혼합액 : 물 1ℓ 당 $0.2\text{mm} \sim 0.6\text{mm}$ 크기 표준 모래 25g

라. 노즐을 0.1m/sec 속도로 이동하면서 등록번호판에 작동압력 $6.0 \pm 0.5\text{bar}$ 로 혼합액을 10회 분사시킨다.

마. 분사가 완료된 후 부드러운 형갈 등으로 등록번호판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판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3. 방수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표면에 물이 침투하지 않아야 한다.

가. 등록번호판을 챔버 안에 넣고 챔버 안의 온도를 상온에서 65°C

까지 올리고 65℃에서 10분 동안 유지한다.

나. 등록번호판을 챔버에서 꺼내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근 다음 부드러운 **형궤** **등**으로 등록번호판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판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② 필름방식 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반사성능 : 다음 반사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측각 (도)	입사각(cd/lx · m ²)			
	±5°	±30°	±40°	최대값
0.2°	<u>20 이상</u>	<u>3.5 이상</u>	<u>1.5 이상</u>	<u>30 이하</u>
0.33°	<u>15 이상</u>	<u>3 이상</u>	<u>1 이상</u>	
1.5°	<u>3 이상</u>	<u>1 이상</u>	<u>0.5 이상</u>	

2. 색상 내후성 : 필름 및 문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험할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의 색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내마모성 : 필름 및 문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험할 경우 **박리, 갈라짐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내온도 : 필름 및 문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할 경우 **박리, 갈라짐, 변색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가. 온도 65±2℃, 상대습도 10±5%에서 연속하여 7시간

나. 온도 23±5℃, 상대습도 50±10%에서 연속하여 1시간

다. 온도 **-30℃**에서 연속하여 15시간 유지한다.

5. 접착력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알루미늄판**의 접착면에서 60mm를 초과하여 분리되거나 필름의 찢어짐이 발생하

지 않아야 한다.

가. 알루미늄판을 폭 25mm, 길이 150mm 이상으로 잘라내어 시편을 만든 후 해당 시편을 온도 -20°C 에서 연속하여 1시간 유지한다.

나. 가목에 따른 시편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의 필름을 알루미늄판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다. 나목에 따라 분리한 필름을 알루미늄의 직각 방향으로 18N의 힘을 60초간 가한다.

6. 내충격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 및 문자는 충격지점 중심으로부터 5mm 외의 영역에서 박리, 갈라짐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0°C 에서 연속하여 1시간 유지한다.

나. 냉각된 번호판을 꺼낸 직후 번호판을 콘크리트 또는 12.5mm 두께의 강판과 같은 단단한 지지대 위에 놓는다.

다. 지름 $25\pm 1\text{mm}$, 무게 $67\pm 1\text{g}$ 의 강구를 번호판으로부터 2m 높이에서 번호판의 문자 및 필름 부분위로 낙하시킨다.

7. 내굽힘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 및 문자는 박리, 갈라짐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3\pm 5^{\circ}\text{C}$ 에서 지름 50mm 심봉에 필름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한다.

나. 2초안에 심봉을 중심으로 90° 구부린다.

8. 방수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 및 문자는 손

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3\pm5^{\circ}\text{C}$ 에서 24시간동안 탈이온수에 담근다.

나. 탈이온수에서 꺼낸후 48시간동안 상온에서 방치한다.

9. 청정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 및 문자는 손상이 발생되지 않고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윤활유와 흑연 혼합물을 필름 표면에 바른다.

나. 헵탄과 같은 지방성 용액으로 닦은 후 중성세제로 세척한다.

10. 연료 저항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 및 문자의 박리, 갈라짐, 변색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필름 가장자리 부분으로부터 1mm를 초과하여 얼룩이나 연료의 침투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무연휘발유에 번호판을 1시간 담근다.

나. 무연휘발유에서 꺼낸후 상온에서 1시간 방치한다.

11. 내부식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 및 문자는 부식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35\pm2^{\circ}\text{C}$ 에서 탈이온수 95%와 염화나트륨 5%가 섞인 분무액을 만든다.

나. 22시간 동안 분무액을 1회 분사하고, 2시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1회를 더 반복한다.

③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민간 등에서 설치·운용중인 차량번호인식시스

템에서 식별과 인식이 가능하도록 제작·관리 되어야 한다.

제3조의2(번호판의 정보제공 및 보증기간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필름방식 번호판의 필름표면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6자리 표기를 해야 한다.

1. 필름 제조사명 : 첫째자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1자리 영문자
2. 제품번호 : 둘째부터 셋째자리에 제1호의 필름 제조사에서 검사 받은 제품 순서에 따른 영문자 또는 숫자로 조합된 2자리 기호
3. 생산시기 : 넷째부터 여섯째자리에 연(年) 2자리, 분기 1자리를 순서대로 표기한 3자리 숫자

② 번호판의 뒷면에는 등록번호판용 원판제작자명 및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를 표기해야 한다.

③ 필름방식 번호판 불량 등에 따른 보증기간은 번호판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번호판의 색상) ①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 나. 외교용(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 감청색바탕에 흰색문자

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2. 자동차운수사업용 : 황색바탕에 검은색문자

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청색 문자로 한다.

③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문자로 하고 3mm폭의 적색사선을 긋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가. 페인트방식 번호판 :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의한다. 단,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Delta E^*_{ab} \leq 3$ 으로 한다.

색상명칭	색번호표	색상명칭	색번호표
분홍빛 흰색	L* = 89.10 a* = 0.58 b* = 3.95	보라빛 검은색	L* = 25.70 a* = 0.10 b* = -5.48
녹색	2.5G 4/10	적색	5R 4/14
황색	2.5Y 8/16	청색	2.5PB 3/13
남색	5PB 3/10	감청색	7.5PB 2/8
흰색	N9.5	검은색	N1.5
연녹색	L* = 73.37 a* = -21.17 b* = 53.88		

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 필름 바탕색은 다음과 같이 하며, 태극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2-2에 의한다.

1) 일반용 : 필름 바탕색은 다음 국가기술표준원의 KS T 3507에

적합해야 한다.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1		2		3		4	
	x	y	x	y	x	y	x	y
흰색	0.303	0.300	0.368	0.366	0.340	0.393	0.274	0.329

2) 법인업무용: 필름 바탕색은 다음 CIE L*a*b* 표색계에 따르며,
허용오차(ΔE_{00})는 CIEDE2000 총색차식을 적용하여 5이하로
한다.

색상명칭	색번호표
연녹색	L* = 71.15 a* = -30.67 b* = 60.02

⑤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며, 색상 및
문양 등은 별표 제18에 의한다.

제4조의2(번호판 등의 검사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록번호판재료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검사
를 받아야 한다.

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가. 페인트방식 번호판 : 내마모성, 방수성, 문자의 색상 및 규격

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 내마모성, 방수성, 청정성, 연료저항성,
문자의 색상 및 규격

2. 필름부착방식 등록번호판용 반사필름제작자(문자 채색에 필요한
잉크 또는 전사필름 등을 포함한다) : 번호판의 색상, 반사성능, 색상
내후성, 내마모성, 내온도, 접착력, 내충격성, 내굽힘성, 방수성, 청정

성, 연료저항성 및 내부식성

3. 등록번호판용 원판제작자

가. 페인트방식 번호판 : 알루미늄 재질, 규격, 등록번호판 색상 및 색상 내후성

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 알루미늄 재질, 규격, 등록번호판 접착력, 내충격성 및 내굽힘성

4. 등록번호판용철형제작자 : 문자의 규격

5. 등록번호판 보조대제작자 : 구조 및 내충격성

②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반사성능 등과 번호판 보조대에 대한 품질·성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 번호판의 식별과 인식여부에 대한 검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모의한 도로환경모사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필름부착방식 등록번호판용 반사필름제작자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의 식별과 인식 여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 ①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18의 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차종별 분류기호는 승용자동차는 01-69, 승합자동차는 70-79, 화물자동차는 80-97, 특수자동차는 98-99로 한다.

구분		분류	기호
차종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100~699
		대여사업용	
		일반사업용	01~69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700~799
		대여사업용	
		일반사업용	70~79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800~979
		일반사업용	80~97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980~997
		대여사업용	
		일반사업용	98, 99
	긴급자동차	경찰차	998~999
		소방차	
용도별	비사업용 (SOFA 자동차 포함)	자가용 (관용포함)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 어,저,고,노,도,로,모,보,소,오,조,구, 누,두,루,무,부,수,우,주
	자동차운수사업용	일반용	바, 사, 아, 자, 배
		대여사업용	허, 하, 호
	외교용	외교관용	외교
		영사용	영사
		준외교관용	준외
		준영사용	준영
		국제기구용	국기
		기타외교용	협정, 대표

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 기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차종 기호: 1부터 9까지의 숫자 1자리 기호
2. 용도 기호: 제1항에 따른 용도별 비사업용 기호 1자리와 1부터 9까지의 숫자 1자리를 순서대로 표시한 2자리 기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

는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거·
너·더·러·머·버·서·어·저·처·커·터·퍼·허를 용도 기호
로 표시한다.

제6조(관할관청 기호표시)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며,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 시·군 또는 구
의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다만, 비사업용·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의 기호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 서울
대구광역시 : 대구
광주광역시 : 광주
울산광역시 : 울산
경기도 : 경기
충청북도 : 충북
전라북도 : 전북
경상북도 : 경북
제주도 : 제주

부산광역시 : 부산
인천광역시 : 인천
대전광역시 : 대전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
강원도 : 강원
충청남도 : 충남
전라남도 : 전남
경상남도 : 경남

제6조의2(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 ① 앞쪽 등록번호판의 체결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판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체결하거나, 번호판 보조대를 이
용하여 체결할 것.
2. 제1호의 번호판 보조대는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등록번호판을 떼
어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손 만으로는 번호판과 분리가 어려워
야 하며, 등록번호판을 결합한 상태에서 제3조 제2항 제6호의 시험
방법으로 각 결합부위를 충격하였을 때 파손이 없을 것

②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끝으로부터 중심선을 따라 각각 20m의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의 높이는 0.5~7m, 후면의 높이는 0.5~3m의 범위와 좌우측의 각각 11.5m의 범위에서 관측하였을 때 가리워지는 부분이 없을 것.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제1호의 관측에서 가리워지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가장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하거나 등록번호판 1개를 추가 부착하여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할 것
3.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않을 것

③ 등록번호판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중심이 10c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함.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부착할 것
2. 번호판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지면에서 1.2m 이내의 높이. 다만, 1.2m 이내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④ 등록번호판의 부착 각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진행방향 중심선을 기준하여 직각으로 부착하고, 지면과

수평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울기 허용오차는 $\pm 5^\circ$ 이내일 것

2. 등록번호판의 수직방향 기울기는 등록번호판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등록번호판이 지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5° 이내, 위쪽 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상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15° 이내, 위쪽 방향으로 5° 이내로 부착할 것

⑤ 등록번호판은 아래의 허용 기준내에서 편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판의 면 기준으로 곡률반경이 3m 이상일 것
2. 등록번호판에 꺾인 부위가 없을 것

제7조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